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

의안번호 115

제출년월일 1999. 6.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시행되면서 같은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방법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적용범위는 대중교통지원사업에 한정함(안 제3조)
-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원 및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안 제4조)
- 대중교통지원사업중 보조대상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매년 7월말까지 선정하여 다음년도 1월부터 지원(안 제5조)
- 운행결손 보상방법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안 제9조)

의안전문 : 별첨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지원사업"이라 함은 제4조제1항 각호 사업의 경영 및 시설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운수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같은법 제37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를 말한다.
4.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대체 교통수단이 없고 1일 운행횟수가 왕복5회 이하인 노선 중에서 이용승객이 적어 운송사업자가 입은 운행결손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내(농어촌)버스의 노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장 지원금의 보조 및 용자

제4조(대중교통지원) ①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중교통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공동시설 및 교통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6.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규칙이 정한 사항

②대중교통지원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일반회계지원금 및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용자회수금
4. 기타 대중교통관련 수입금

제5조(대상자선정 및 지원) ①제4조제1항의 대중교통지원사업중 보조대상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매년 7월말 까지 선정하여 다음년도 1월부터 지원한다. 다만 용자대상사업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자체 재원 또는 금융기관 용자알선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되 도비 예산은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 시군비와 함께 시장·군수 책임하에 집행한다.

제6조(보조 및 용자신청) ①지원금의 보조 또는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지원신청서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보조 및 용자결정) ①시장·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보조 또는 용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용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의 적합 여부
2. 보조 또는 용자대상 사업의 타당성
3. 보조 또는 용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 산정 여부
4. 보조 또는 용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보조 또는 용자 할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원금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차등지원) ①시장·군수는 대중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대중교통지원사업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은행결손의 보조) 제4조제1항제2호의 은행결손액 산정 및 지급 절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7조 내지 제92조를 준용한다.

제10조(담보 및 용자금상환방법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용자금의 담보·채권 채무관리, 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 지원금을 보조받은 사업자가 보조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의 중단) 도지사는 지원금을 보조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보조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때
5.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타 회계로부터 전입을 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지원금을 보조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사업년도 12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를 받은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는 등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년도의 대중교통 지원사업 선정과 지원금 집행은 당해년도에 선정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財政支援) ①國家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을 경영하는 者(이하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財政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

1. 自動車の 高級化·터미널의 現代化
2. 收益性이 없는 路線의 운행
3. 共同施設 및 安全管理施設의 확충·개선
4. 낡은 車輛의 代替
5. 터미널의 移轉과 規模·構造 또는 設備의 확충·개선
6. 기타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振興을 위한 사항으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市·道는 다음 各號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 이 경우 補助 또는 融資의 對象·方法과 補助金 또는 融資金의 償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市·道の 條例로 정한다.

1.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가 제1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旅客의 安全을 위한 交通安全施設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 (버스路線開設命令 등) ①市·道知事は 지역주민의 交通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의 協義를 거쳐 運送事業者에게 버스路線의 開設을 命할 수 있다.

②運送事業者가 제1항의 規定에 의한 버스路線開設命令에 의하여 開設한 路線에서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함으로써 損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市·道知事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제2조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제3조의 規定에 의한 乘用自動車 및 乘合自動車を 말한다.
2.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이라 함은 旅客自動車運送事業·自動車貸與事業 및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을 말한다.
3.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需要에 응하여 自動車を 사용하여 有償으로 旅客을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自動車貸與事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自動車を 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旅客自動車터미널"이라 함은 道路의 路面 기타 一般交通에 사용되는 場所외에서 乗合自動車を 停留시키거나 旅客을 乗下車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施設 및 場所를 말한다.
- 6.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이라 함은 旅客自動車터미널을 旅客自動車運送事業에 使用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 ①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 1. 路線旅客自動車運送事業 : 自動車を 정기적으로 運行하고자 하는 區間(이하 "路線"이라 한다)을 정하여 旅客을 運送하는 사업
- 2. 區域旅客自動車運送事業 : 事業區域을 정하여 그 事業區域안에서 旅客을 運送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細分할 수 있다.

제37조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의 免許) ①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이하 "터미널事業"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の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터미널事業의 免許에 관하여는 제7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